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507

발의연월일 : 2026. 6. 25.

발 의 자 : 이주영・이준석・천하람
윤재옥・김선민・조은희
김미애・황명선・주호영
박준태・이진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경우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과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야외활동이 매우 낮은 수준임. 질병관리청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2023년 기준 13.4%)은 미국 청소년(46.3%)과 비교했을 때 무려 32.9%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과의 격차가 심각함.

또한, 비타민D 결핍으로 병원을 찾은 0~19세 환자가 2014년 4,254명에서 2024년에는 1만130명으로 10년 새 165%나 급증했음. 이는 성장기 아동의 골격 형성 저해뿐만 아니라 면역력 약화 및 정서적 불안을 야기하는 심각한 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한편,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법제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야외활동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아동·청소년을 위한 야외활동 프로그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야외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야외활동 프로그램에 대하여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③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으려는 야외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야외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야외활동 프로그램에는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의 인증 신청 방법·절차와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표시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2(아동·청소년을 위한 야외활동 프로그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야외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야외활동 프로그램에 대하여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③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으려는 야외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야외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야외활동 프로그램에는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의 인증신청 방법·절차와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 략) <신 설>	제3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표시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2.·3. (생 략) ③ ~ ⑤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